

仲裁研究, 第 23 卷 第 1 號  
2013년 3월 2일 발행, pp.177~200

논문접수일 2013. 2. 5  
심사완료일 2013. 2. 21  
게재확정일 2013. 2. 28

# 신속절차에 관한 아시아 4개국의 국제중재규칙 비교 연구

- CIETAC, HKIAC, SIAC, KCAB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Expedited Procedur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in Four Asian  
Countries: CIETAC, HKIAC, SIAC, and KCAB

박 범 철\*

Beom-Cheol Park

주 이 화\*\*

E-Wha Joo

심 상 렬\*\*\*

Sang-Ryul Shim

## 〈 목 차 〉

I. 서론	V. 결론
II.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신속절차 내용	참고문헌
III.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신속절차 비교 분석	Abstract
IV. KCAB의 신속절차 개선방안	

주제어 : 국제중재규칙, 소액 상사중재, 신속절차, CIETAC, HKIAC, SIAC, KCAB

\* (사)한국전자무역연구원 본부장, pinusian@gmail.com

\*\* 광운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석사, wiz301@nate.com

\*\*\* 광운대학교 동북아통상학부 교수, srshim@kw.ac.kr

## I.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국가 간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상거래 및 투자와 관련된 분쟁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상거래 분쟁을 법원의 소송(訴訟, litigation)이 아닌 '사적인 재판(private litigation)'이라고 불리는 중재(仲裁, arbitration)에 의해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세계적으로 약 100 여개가 존재하고 있다. '2010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Choic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의 세계 중재기관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이 50%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영국의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 LCIA)이 14%, 미국의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 AAA/ICDR)가 8%로 나타났으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가 5%를 차지하였다. 중재기관 선택의 요인으로는 '중립성'과 '국제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 중재기관의 '평판 및 인식', '중재규칙'의 순으로 나타났다.<sup>1)</sup> 이러한 조사 결과는 중재기관들이 국제중재 유치에 위해 어떠한 요인에 관점을 두고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 세계 각국의 중재기관들이 중재규칙을 새롭게 개정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이고 만족스런 중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010년 4월 LCIA의 인도지부, 2010년 7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 SIAC), 2010년 8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지역중재센터(Kuala Lumpur Regional Centre for Arbitration : KLRCA), 2011년 6월 홍콩국제중재위원회(HKIAC), 2011년 8월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ACICA)가 각각 새로운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sup>2)</sup>하고 있다. 또한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 CIETAC)도 2012년 5월부터 개정된 중재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한-미 FTA의 본격 시행과 함께 투자분쟁(ISD)이 사회적인 이슈

1) "2010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Choic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Schoo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2010, pp.22-23.

2) 김태훈·차경자,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규칙의 최근 개정내용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2권 제1호, 2012, p.4.

로 대두되면서 국제중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국제중재 허브를 지향하는 대한상사중재원(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 KCAB)은 국제중재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중재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1년 6월 29일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된 국제중재규칙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개정된 국제중재규칙에서 신설된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신속절차(expedited procedures)’이다. 신속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신청금액과 반대신청금액이 각 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국제상거래 분쟁에 적용된다. 신속절차의 신설로 소액 중재사건에 대한 중재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처리되고, 중재 이용자의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개정된 국제중재규칙 및 신속절차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인 김도훈(2012)<sup>3)</sup>은 KCAB 개정 국제중재규칙상 도입된 신속절차와 다른 국제중재기관들의 신속절차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향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박원형(2012)<sup>4)</sup>은 KCAB 국제중재규칙의 개정내용과 ICC 중재규칙의 개정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신군재(2012)<sup>5)</sup>는 개정된 KCAB 국제중재규칙의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된 국제중재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김태훈·차경자(2012)<sup>6)</sup>는 KCAB 중재규칙의 개정 연혁, 2011년 개정된 국제중재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국제중재규칙에 신설된 규칙에서 신속절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해사중재와 관련 연구로서 이원정·김성룡(2012)<sup>7)</sup>은 런던해사중재인협회의 SCP 규칙과 KCAB 중재규칙에 포함된 신속절차를 비교 분석하고, 실무 적용상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개정된 KCAB 중재규칙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신속절차와 관련한 연구는 해사중재 분야에서 일부 언급되는 등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김도훈(2012)은 비교 대상이 된 국제중재기관 중에 국제중재규칙의 신속절차가 아닌 국내중재규칙의 신속절차 내용이 섞여 있다는 점에서 비교대상 선정에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3) 김도훈, “국제중재에서의 신속절차에 관한 고찰 : 대한상사중재원의 개정 국제중재규칙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2012, pp.691-716.

4) 박원형,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의 개정 동향- ICC 중재규칙의 개정과 비교하여”, 『중재연구』 제22권 제2호, 2012, pp.159-176.

5) 신군재, “KCAB 개정 국제중재규칙에 관한 고찰”, 『관세학회지』 제13권 제1호, 2012, pp.267-280.

6) 김태훈·차경자, 전거서, 2012, pp.3-23.

7) 이원정·김성룡, “해사중재에서 런던해사중재인협회(LMAA)와 대한상사중재원(KCAB)간의 소액·신속절차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해법학회지』 제34권, 제1호, 2012, pp.263-290.

또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신속절차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인 중국, 홍콩, 싱가포르, 한국의 국제중재기관들에 대한 비교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액 국제중재사건을 위해 신속절차 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국제중재기관 가운데 중국(CIETAC), 홍콩(HKIAC), 싱가포르(SIAC) 및 한국(KCAB)의 신속절차 규칙들의 내용과 특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KCAB의 신속절차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Ⅱ. 주요 국제중재 기관의 신속절차

### 1. 중국 CIETAC의 신속절차

#### (1) 적용범위

중국 국제상회에서는 1994년 3월 17일과 1995년 9월 1일 CIETAC 및 CMAC의 중재규칙을 수정할 때 신속절차를 신설하였다. 2000년 ‘CIETAC 중재규칙’을 개정할 때 신속절차 조항을 많이 보완하였고, 현재 시행되는 규칙은 2012년에 개정된 규칙이다.<sup>8)</sup>

현행 CIETAC 규칙을 살펴보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명시된 합의서가 없는 한 분쟁금액이 200만 인민폐(RMB)<sup>9)</sup>를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분쟁금액이 200만 인민폐를 초과하지만 일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신청하고 상대측이 이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에는 신속절차를 적용한다.<sup>10)</sup>

금전적 청구를 명시하거나 분쟁 금액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CIETAC은 기타 관련 요소를 전체적으로 고려한 후 신속절차 적용여부를 결정하지만, 사건의 복잡성과 관련된 관심 분야에 한정하지 않는다.<sup>11)</sup>

또한 신속절차의 적용은 신청에 대한 어떠한 증액신청 또는 반대신청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증액신청금액 또는 반대신청금액이 인민폐 2백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중재관정부가 절차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결정

8) ‘CIETAC의 중재규칙’ 제4장의 영문 명칭은 ‘Summary Procedure’로 간이절차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신속절차로 표기하였다.

9) 2012년 ‘CIETAC 중재규칙’ 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50만 인민폐 이하 분쟁금액 또는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신속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

10) ‘CIETAC 중재규칙’ 제4장 제54조 1항.

11) ‘CIETAC 중재규칙’ 제4장 제54조 2항.

하지 않는 한 계속 신속절차가 적용된다.

## (2) 중재인 선정

CIETAC의 신속절차는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 규칙의 제26조에 의해 1인의 중재인으로 단독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 절차를 진행한다.<sup>12)</sup> 당사자는 중재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재인 후보자의 추천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sup>13)</sup> 각 의장 중재인 후보로 1명에서 5명의 중재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목록에서 한 명의 공통된 후보가 나올 경우 그 후보를 중재인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목록에서 한 명 이상의 공통된 후보가 나오면, CIETAC 의장은 후보자 중에 사건의 상황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를 선정하여 의장중재인 역할을 부여한다. 후보자 목록에 공통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의장 중재인은 CIETAC 의장이 임명한다.<sup>14)</sup> 또한 당사자가 공동으로 위의 규정에 따라 의장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의장 중재인은 CIETAC 의장이 임명한다.<sup>15)</sup>

## (3) 심리절차

CIETAC의 신속절차는 심리방식 및 절차를 간편화하면서 일정한 제한을 두었다. 분쟁심리는 당사자나 중재판정부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중재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즉,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면자료 또는 증거자료에 의해 서면심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sup>16)</sup>

구술 심리에 의해 심리를 할 경우는 중재판정부에서 심리의 일시나 장소를 15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술 심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데, 구술 심리의 통지를 접수하고 3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sup>17)</sup> 그러나 당사자가 3일 이내에 구술 심리의 연기 요청을 제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그 이유를 정당화할 수 있으면 중재판정부는 심리 연기요청에 대한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sup>18)</sup> 구술심리의 연기에 대한 요구와 마찬가지로, 연기

12) 'CIETAC 중재규칙' 제4장 제56조.

13) 'CIETAC 중재규칙' 제2장 제25조 제2항.

14) 'CIETAC 중재규칙' 제2장 제25조 제3항.

15) 'CIETAC 중재규칙' 제2장 제25조 제4항.

16) 'CIETAC 중재규칙' 제4장 제58조.

17) 'CIETAC 중재규칙' 제4장 제59조 제1항.

18) 'CIETAC 중재규칙' 제4장 제59조 제2항.

된 구술심리의 통보는 제1항에 명시된 시간제한에 따른다.<sup>19)</sup>

#### (4) 판정

신속절차를 거치는 중재판정의 기한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정을 한다고 규정한다.<sup>20)</sup> 판정의 연장에 대한 정당한 이유와 중재판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CIETAC의 사무총장은 판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sup>21)</sup> 분쟁사실이 복잡하거나 짧은 시일 내에 판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판정기간을 계산할 때는 모든 정지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sup>22)</sup>

#### (5) 중재인의 수당과 경비

CIETAC의 신속절차에 해당하는 CIETAC 중재규칙 제4장의 간이절차(Summary Procedure)에서는 따로 신속절차를 적용했을 때의 중재인 수당과 경비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일반절차를 적용할 경우와 동일한 요율표<sup>23)</sup>를 따르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신속절차의 경우에 사무국에 의하여 합리적인 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홍콩 HKIAC의 신속절차.

### (1) 적용범위

현행 HKIAC 중재규칙을 살펴보면,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사무국이 관련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신청과 반대신청(또는 상계항변)의 가액의 총합이 미화 250,000달러를 넘지 않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신속절차를 적용한다.<sup>24)</sup>

### (2) 중재인 선정

HKIAC 신속절차에서 중재합의에서 3인의 중재판정부에 회부하기로 정하지 않는

19) 'CIETAC 중재규칙' 제4장 제59조 제3항.

20) 'CIETAC 중재규칙' 제4장 제60조 제1항.

21) 'CIETAC 중재규칙' 제4장 제60조 제2항.

22) 'CIETAC 중재규칙' 제4장 제60조 제3항.

23) <http://www.cietac.org/index/applicationForArbitration/47601fd5a0e7e87f001.cms>

24) 'HKIAC 중재규칙' 제6장 제38.1조.

한, 사건은 단독 중재인에 회부하여 해결한다.<sup>25)</sup> 중재합의에서 3인의 중재판정부에 회부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사무국은 당사자들에게 단독 중재인에게 회부하는 합의를 하도록 권고한다. 당사자들이 단독 중재인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인 3인의 수당은 이 규칙에 첨부된 별표 수수료 및 비용에 따라 결정한다.<sup>26)</sup> 사무국은 제7.1조, 제7.2조 및 제8.2조에 따라 중재인을 지명하기 위한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sup>27)</sup>

또한 중재인 선정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의하여 선정된 모든 중재인들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중재의 당사자들의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단독 중재인과 3인의 중재판정부의 의장 중재인은 어떤 당사자와도 같은 국적이어서는 안 된다.<sup>28)</sup>

### (3) 심리절차

HKIAC 중재규칙의 신속절차 조항에 따르면, 답변서 제출 이후 당사자들은 원칙적으로 청구이유서 1회 및 답변이유서 및 반대신청서를 1회를 제출할 수 있고, 반대신청이 있는 경우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이유서를 1회 제출할 수 있다.<sup>29)</sup> 중재판정부가 1회 또는 그 이상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오직 서면심리에 의하여 분쟁에 관한 결정을 한다.<sup>30)</sup>

### (4) 판정

HKIAC의 신속절차의 중재판정은 사무국이 기록을 중재판정부에게 송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려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은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sup>31)</sup> 당사자들이 판정의 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의 이유를 약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sup>32)</sup>

25) 'HKIAC 중재규칙' 제6장 제38.1조 (b)항.

26) 'HKIAC 중재규칙' 제6장 제38.1조 ©항.

27) 'HKIAC 중재규칙' 제6장 제38.2조 (a)항.

28) 'HKIAC 중재규칙' 제3장 제11조.

29) 'HKIAC 중재규칙' 제6장 제38.2조 (b)항. "after the submission of the Answer to the Notice of Arbitration, the parties shall in principle be entitled to submit one Statement of Claim and one Statement of Defence (and Counterclaim) and, where applicable, one Statement of Defence in reply to the Counterclaim."

30) 'HKIAC 중재규칙' 제6장 제38.2조 (c)항. "the arbitral tribunal shall decide the dispute on the basis of documentary evidence only, unless it decides that it is necessary to hold one or more hearings."

31) 'HKIAC 중재규칙' 제6장 제38.2조 (d)항. "the award shall be made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when the HKIAC Secretariat transmitted the file to the arbitral tribunal.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 HKIAC Secretariat may extend this time limit."

## (5) 중재인의 수당과 경비

HKCIAC의 중재인 수당은 이 규칙에 첨부된 별표 수수료 및 비용에 따라 결정한다. 신청인은 중재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신청수수료로 미화 1,000달러를 납입하여야 하며, 신청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이 신청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중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sup>33)</sup> 또한 당사자들이 이 별표를 적용하여 중재인 수당을 결정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중재인 수당의 요율표와 같이 부과한다.<sup>34)</sup>

## 3. 싱가포르 SIAC의 신속절차

## (1) 적용범위

SIAC의 중재규칙의 신속절차는 신청, 반대신청 및 증액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하여 분쟁금액이 총 5,000,000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된다.<sup>35)</sup>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sup>36)</sup> 극히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건일 경우,<sup>37)</sup> 또한 중재판정부가 완전히 구성되기 전에 당사자는 SIAC 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속절차에 따른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sup>38)</sup>

## (2) 중재인 선정

SIAC 중재규칙 제5.1조에 의해 신속절차를 적용할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사무국이 그 제안과 분쟁의 복잡성, 관련 액수 또는 기타 분쟁에 관련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사건을 3인의 중재인에게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인의 단독중재인에게 회부된다.<sup>39)</sup> 단독중재인을 선정해야 할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단독중재인으로 선정될 자로서 1인 이상의 중재인 후보를 제안할 수 있다.<sup>40)</sup> 사무국이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21일 내에 당사자들이 단

32) 'HKIAC 중재규칙' 제6장 제38.2조 (e)항. "the arbitral tribunal shall state the reasons upon which the award is based in summary form,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that no reasons are to be given."

33) 'HKIAC 중재규칙' 별표 중재 수수료 비용 제1조.

34) 'HKIAC 중재규칙' 별표 중재 수수료 비용 제3조.

35) 'SIAC 중재규칙' 제5.1조 a항.

36) 'SIAC 중재규칙' 제5.1조 b항.

37) 'SIAC 중재규칙' 제5.1조 c항.

38) 'SIAC 중재규칙' 제5.1조.

39) 'SIAC 중재규칙' 제5.2조 및 제 5.2조 b항.

40) 'SIAC 중재규칙' 제.7.1조.



독중재인의 선임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또는 언제든지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사장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단독중재인을 선임해야 한다.<sup>41)</sup>

사무국장은 어느 당사자가 제안하여 지명된 중재인 후보자나 선정된 중재인을 포함한 제3자가 지명한 중재인 후보자에 대하여 그의 재량으로 선임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sup>42)</sup> 이사장이 중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sup>43)</sup> 그리고 사무국은 신속절차에 의해 이 규칙에 따른 어떠한 기한도 단축시킬 수 있다.<sup>44)</sup> 당사자로부터 지명되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이 규칙에 의하여 중재를 하는 모든 중재인은 언제나 독립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그 어떤 당사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하여서는 안 된다.<sup>45)</sup> 또한 이사장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의 자격 요건과,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인 선정에 기여할 만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sup>46)</sup>

### (3) 심리절차

당사자들이 서면심리에 의한 절차진행에 동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모든 증인과 전문가 증인의 심문 및 주장의 진술을 위한 구술심리를 열어야 한다.<sup>47)</sup> 다른 합의가 없을 경우 기본적으로 서면심리로 진행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면심리가 구술심리에 비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4) 판정

SIAC의 사무국이 예외적으로 등록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신속절차의 판정은 중재판정부를 구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한다.<sup>48)</sup> 그리고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판정의 선고 이유를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sup>49)</sup>

41) 'SIAC 중재규칙' 제.7.2조.

42) 'SIAC 중재규칙' 제.6.3조.

43) 'SIAC 중재규칙' 제.6.4조.

44) 'SIAC 중재규칙' 제5.2조 a항.

45) 'SIAC 중재규칙' 제10.1조.

46) 'SIAC 중재규칙' 제10.2조.

47) 'SIAC 중재규칙' 제5.2조 c항.

48) 'SIAC 중재규칙' 제5.2조 d항.

49) 'SIAC 중재규칙' 제5.2조 e항.

#### (5) 중재인의 수당과 경비

SIAC 중재규칙 신속절차에 해당하는 제5조에는 신속절차 사건의 중재인 수당에 대해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중재비용과 예치금에 관한 규칙인 제31조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무국의 행정수수료와 중재판정부의 수당 및 경비, 기타 지원 등에 대해 판정문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보수 모두 청구금액에 따른 기준이 있으며, 일정 금액의 예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sup>50)</sup>

### 4. 한국 KCAB의 신속절차

#### (1) 적용범위

KCAB의 ‘국제중재규칙 2011’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신속절차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있거나 신청금액이 2억 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신속절차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sup>51)</sup> 즉 신속절차는 ‘당사자 간 신속절차에 따르기로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신청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속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의 증액신청에 의해 신청금액 또는 반대신청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속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sup>52)</sup>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서 신속절차를 계속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있고, 중재판정부가 이미 구성되어 이를 승인한 때에는 2억 원을 초과해도 신속절차를 계속 적용할 수 있다.<sup>53)</sup> 또한 신청금액과 반대신청금액을 포함한 분쟁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신속절차 사건의 경우 사무국이 선정하는 중재인에 대하여는 사무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인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54)</sup>

#### (2) 중재인 선정

신속절차의 중재인 선정 조항인 제40조에서 제1항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이 규칙 제12조의<sup>55)</sup>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무국이 국제중재인

50) ‘SIAC 중재규칙’ 제31.1조.

51) ‘국제중재규칙 2011’ 제6장 제38-44조.

52) ‘국제중재규칙 2011’ 제39조 제1항.

53) ‘국제중재규칙 2011’ 제39조 제2항.

54) ‘국제중재규칙 2011’ 별표II 제1조 제4항.

55) ‘국제중재규칙 2011’ 제12조 제4항: 중재인 선정시 사무국은 선정될 중재인의 경험, 일정, 국적 및 거주지를 고려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요청하는 경우 사무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들과 국적이 다른 자를 단독 중재인이나 중재판정부의 의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명부 중에서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통하여 3인의 중재관정부에 의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무국은 당사자들에게 단독관정부에 의할 것을 합의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sup>56)</sup>

다시 말해 신속절차의 경우 중재인 선정 시 사무국이 국제중재인명부에서 1인의 중재인을 직접 선정하도록 하였는데, 1인의 단독중재인 경우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제12조에서 규정한 중재인 선정 시의 고려사항, 특히 국적 고려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거주 외국인도 중재인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sup>57)</sup>

### (3) 심리절차

#### 1) 구술심리

신속절차의 심리절차와 관련된 제 41조 구술심리 절차에서는 심리기일 일시 및 장소의 결정과 통지방식에 대해 “중재관정부는 구술심리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여 구술, 인편, 전화 또는 서면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 및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8)</sup> 구술심리는 1회로 종결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중재관정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거나 또는 심리 종결 후 추가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sup>59)</sup> 이와 같이 신속절차는 심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일반절차에 비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중재규칙의 신속절차에 적용됐던 심리기일 일시 및 장소를 심리개시 3일전에 통지해야 된다는 규정이<sup>60)</sup> 국제중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심리 종결 후 추가서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sup>61)</sup>

#### 2) 서면심리

신속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고 신청금액 및 반대신청금액이 각각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중재관정부는 서면심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중재관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1회의 구술심리를 개최할 수 있다.<sup>62)</sup> 그러나 서면 제출의 기간과 방법에 관해서는 중재관정부가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

56) ‘국제중재규칙 2011’ 제40조 제1항-2항.

57) 김태훈·차경자, 전거서, 2012, pp.12-13.

58) ‘국제중재규칙 2011’ 제41조 제1항.

59) ‘국제중재규칙 2011’ 제41조 제2항.

60) ‘국내중재규칙 2011’ 제58조 제1항.

61) ‘국제중재규칙 2011’ 제41조 제2항.

62) ‘국제중재규칙 2011’ 제42조 제1항.

야 한다고 명시할 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sup>63)</sup>

#### (4) 판정

신속절차의 판정 조항인 제43조에 따르면,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국은 중재판정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판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sup>64)</sup> 국내중재의 신속절차 판정 조항과 국제중재의 신속절차 판정조항의 차이점은 판정을 하는데 있어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sup>65)</sup>

이러한 규정은 신속절차의 판정기한이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3개월로 비교적 짧고, 신속절차에서의 중재인수당이 소액인 점과 원칙적으로 영문으로 판정문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정이유 대신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도록 하여 판정문 작성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sup>66)</sup>

#### (5) 중재인의 수당과 경비

국제중재규칙 부칙에서 중재인의 수당과 경비와 관련하여 “신청금액과 반대신청금액을 포함한 분쟁금액이 2억 원 이하인 신속절차 사건에서 사무국이 선정하는 중재인에 대하여는 사무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인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sup>67)</sup> 이에 따라 신청금액과 반대신청금액을 합산하여 2억원 이하인 신속절차 사건의 경우 사무국이 선정하는 중재인에 대하여는 사무국의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별도의 인화된 수당표가 적용된다. 당사자 부담액은 분쟁금액에 따라 0-70만원이고, 실수령액인 중재인 수당액은 40-110만원(중재원 지급 40만원 포함)이 되어 당사자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었다.<sup>68)</sup>

### Ⅲ.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신속절차 비교 분석

#### 1. 주요 내용별 신속절차 비교 분석

63) ‘국제중재규칙 2011’ 제42조 제2항.

64) ‘국제중재규칙 2011’ 제43조 제1항.

65) ‘국제중재규칙 2011’ 제43조 제2항.

66) 김태훈·차경자, 전계서, 2012, p.14.

67) ‘국제중재규칙 2011’, 별표 II, 제1조 제4항.

68) 김태훈·차경자, 전계서, 2012, p.17.

(1) 적용범위

CIETAC, HKIAC, SIAC, 그리고 KCAB 국제중재규칙의 신속절차의 적용범위에 대한 규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분쟁금액의 제한 범위가 한화 기준 2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 이하로 소액 사건 위주로 신속절차를 적용하는 유형이다. 제한 범위가 정해져 있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신속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 범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소액 사건의 경우 일반절차보다 신속절차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CIETAC, HKIAC, KCAB의 국제중재규칙상 신속절차가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

둘째, 분쟁금액의 제한 범위가 한화 기준 44억 3천만 원 이하로 소액 사건은 물론 상대적으로 고액의 사건까지 모두 신속절차 적용이 가능한 유형이다. 규정에 적용된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신속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첫 번째 유형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두 번째 유형의 특징은 신속절차 적용이 가능한 금액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소액 사건이 아니더라도 신속절차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SIAC의 국제중재규칙상 신속절차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심제로 판정이 내려지는 중재의 특성상, 공평하고 정당하게 사건 해결을 원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고액의 민감한 사건 해결을 위해 신속절차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신속절차 적용범위를 줄이자고 주장하는 연구<sup>69)</sup>도 있는 만큼, SIAC처럼 높은 금액까지 신속절차가 적용되는 것이 꼭 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중재인 선정

중재인의 선정과 관련하여 중재인의 수, 중재인 선정 기한으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을 살펴본다.

중재인 선정 시 모든 기관들이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아 당사자들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별도의 합의가 없다는 전제에서 보았을 때 중재인의 수를 1인으로 정하기만 한 기관으로는 CIETAC과 SIAC가 있다. 그리고 1인의 중재인 선정을 기본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3인의 중재판정부로 합의한 경우 사무국에서 다시 단독판정부로 합의하도록 권유하는 기관으로 HKIAC와 KCAB가 있다.

69) 김도훈, 전게서, p.699.

분쟁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따지지 않고 신속한 분쟁해결만을 염두에 둔다면 신속절차에 적합한 중재인의 수는 1인의 단독 중재인이 적합할 것이다. 또한 중재인의 수가 늘어나면 추가적인 중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의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분쟁 사안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3인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신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대로 3인의 중재판정부로 할 것인지, 아니면 1인의 단독판정부로 변경을 권고할 것인지 사무국의 적절한 판단 하에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신속절차라고 하여 항상 소액의 단순한 사건만 접수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복잡한 사건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유형이 가장 합리적인 형태라 판단된다.

중재인 선정 기한에 대한 유형으로, 사무국에 기한 단축의 권한을 부여한 기관과 선정 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는 기관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HKIAC은 일반절차에 의해 중재인 선정을 하지만 신속절차의 규정에 사무국에 중재인을 지명하기 위한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sup>70)</sup> SIAC은 사무국에 중재인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 신속절차에 따른 어떠한 기한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하였다.<sup>71)</sup> SIAC의 일반규칙에서도 중재인 선정 시 당사자들의 중재신청 접수일로부터 21일내에 합의가 안 될 경우 사무국장이 중재인을 선정하게 되어 있다.<sup>72)</sup>

후자에 해당하는 CIETAC은, 당사자가 중재인 후보자 목록을 제출하는 기한은 정해져 있으나, CIETAC의 사무국이나 의장이 중재인을 선정해야 하는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KCAB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중재인 선정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즉시 이루어지므로 합리적이다.

### (3) 심리절차

심리절차에 관한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CIETAC이 해당된다. 두 번째 유형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구술심리를 열거나,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구술심리를 열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유형으로

70) 'HKIAC 중재규칙' 제6장 제38.2조.

71) 'SIAC 중재규칙' 제5.2조 a항.

72) 'SIAC 중재규칙' 제7.1조.

HKCIAC, SIAC에 해당한다. 세 번째 유형은 기본적으로 구술심리 1회를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의 합의나 신청금액에 따라 서면심리가 가능한 유형으로 KCAB에 해당한다.

먼저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중재사건에 알맞은 형태로 보다 효율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원칙과 예외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의 부재로 분쟁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sup>73)</sup>

구술심리<sup>74)</sup>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파악하기 쉽고, 의문 있는 점이 있으면 즉시 해결을 할 수 있으므로, 중재판정부와 당사자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중재에서는 해외의 당사자의 경우에 특히, 구술심리 참석에 시간적·공간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에 구술심리보다는 서면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신속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유형과 같이 서면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심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 (4) 판정

판정과 관련하여 판정기간, 판정이유에 대한 요지 기재 의무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을 살펴보겠다. 먼저 판정기간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을 기점으로 판정기간을 정한 유형과 사무국이 기록을 중재판정부에 송부한 날을 기점으로 판정기간을 정한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 CIETAC, SIAC, KCAB가 해당한다. CIETAC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3개월, SIAC은 6개월, KCAB은 3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자에 해당되는 HKCIAC은 사무국이 기록을 중재판정부에 송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75)</sup>

판정기간을 제시하는 것은 신속성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중재판정부에게 신속한 판단을 하도록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 분쟁당사자에게는 분쟁해결에

73) 김도훈, 전거서, p.707.

74) 구술심리의 경우 당사자도 충분한 진술기회를 얻어 중재인을 직접 설득할 수 있고 중재절차의 진행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판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서 절차적 만족감과 결과에 대한 수용도(만족감)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김학기, 2009)

75)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 HKCIAC 중재규칙 원문에서도 단순히 'data'로 표기되어 있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심리절차와 관련된 기록으로 판단된다.

소요되는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속한 판정이 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76)</sup>

또한 모든 기관이 중재판정부의 요청이나 사무국의 직권으로 판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정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불가피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규정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제중재기관이 판정기간의 연장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sup>77)</sup> KCAB 신속절차의 경우는 평균 2개월 내로 종결된다.

그러나 신속절차가 단순한 사건 또는 소액의 사건에만 적용되는 절차가 아닌 만큼, 신속성만을 위해 판정기간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KCAB의 3개월이라는 판정기간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므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판정이유에 대한 요지 기재에 관하여서는 요지 기재 의무를 가진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에 해당하는 국제중재기관으로는 HKIAC, SIAC, KCAB가 있으며, 후자에는 CIETAC이 해당된다.

판정이유<sup>78)</sup>는 어떤 판결을 내리기 위해 적용된 법적, 정치적, 도덕적, 혹은 사회적인 원칙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판정이유에 대한 요지를 기재하는 것은 중재판정부가 판정문을 작성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신속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 소결

KCAB은 1989년 중재규칙에서 처음으로 신속절차를 도입하였다. 이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중재제도 이용자들에게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신속절차는 2007년에 제정된 국제중재 제도에는 없었지만, 2011년에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칙으로서 앞으로 KCAB의 국제중재 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무역 분쟁은 삼성과 애플 간 특히 분쟁처럼 매우 금액이 큰 중재사건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금액이 적은 소액분쟁이 많기 때문이다.<sup>79)</sup>

76) 김도훈, 전게서, p.710.

77) 신군재(2012)는 판정기간 연장을 불가하게 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8) 판단의 경위를 나타내는 판결문의 한 부분으로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명백히 밝힌다.

79) 신군재, 전게서, p.271.



신속절차는 일반절차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중재절차로서 분쟁규모가 작은 국제상사분쟁(소액 사건이거나, 금액이 크더라도 복잡하지 않은 분쟁을 포함)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소액의 국제분쟁사건의 경우 분쟁금액에 맞춰 중재인 수당이나 기타 경비가 일반절차의 요금표가 아닌 사무국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해 주므로 경제적 원칙을 실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관별로 심리횟수나 심리기간에 제한을 둔 기관도 있으며, 당사자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기관별로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를 적절하게 적용하고 있다. KCAB의 경우 기본적인 심리방법은 구술심리로 진행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사건에서나 중재판정부의 판단 하에 서면심리도 가능하였는데, 이것은 신속한 절차 진행과 국제중재 이용자들의 편의를 바주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판정기간에 제한을 둔 것도 마찬가지이다. 당사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따라 연기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3개월이나 6개월 등의 제한을 두었다. 이로 인해 악의적으로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고, 그로 인한 비용소모도 줄일 수 있다.

<표 1>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신속절차 비교

구분	CIETAC	HKIAC	SIAC	KCAB
적용범위	인민폐 2백만 위안 이하 (약 3.5억 원 이하)	미화 25만 달러 이하 (약 2.7억 원 이하)	싱가포르 5백만 달러 이하 (약 44.3억 원 이하)	한화 2억 원 이하 -
분쟁금액 제한범위	증액/반대신청 금액이 인민폐 2백만 위안 초과 시 신속절차에 대한 당사자 별도합의 필요	증액/반대신청 금액이 미화 25만 달러 초과 시 신속절차에 대한 당사자 별도합의 필요	증액/반대신청 금액이 싱가포르 5백만 달러 초과 시 허용 안 됨	증액/반대신청 금액이 2억 원 초과 시 신속절차에 대한 당사자 별도합의 필요
심리방법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심리	중재판정부가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서면심리에 의하여 심리	당사자들이 서면심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두 심리 가능	구두심리 (분쟁금액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서면심리)
심리횟수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1회 원칙
판정기간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무국이 심리기록을 중재판정부에 송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재비용	일반절차의 요금표를 따르나 사무국에 의해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일반절차의 첨부된 별표 수수료 및 요금표의 비용에 따라 결정	일반절차의 수수료 및 비용 요금표에 따라 결정되며 일정 금액의 예치금 필요	중재비용은 중재인 수당 외에 관리요금 및 신청요금, 경비 등으로 구성

자료 :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sup>80)</sup>

## 2. 신속절차 비교 분석의 시사점

KCAB는 1989년 국내중재규칙에서 처음으로 신속절차를 도입하였다. 이는 국내 외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중재제도 이용자들에게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신속절차는 2007년에 제정된 국제중재제도에는 없었지만, 2011년에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KCAB의 국제중재 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신속절차는 일반절차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중재절차로서 분쟁규모가 작은 국제상사분쟁 (소액 사건이거나, 금액이 크더라도 분쟁사실이 간단한 분쟁을 포함)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소액의 국제분쟁 사건의 경우 분쟁금액에 맞춰 중재인 수당이나 기타 경비가 일반절차의 요금표가 아닌 사무국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해주므로 경제적 원칙을 실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국의 중재기관별로 규정이 없는 곳도 있지만, 심리횟수나 심리기간에 제한을 둔 기관도 있고, 심리방법 선택 시 구술심리와 서면심리에서 택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일반적으로 구술심리로 진행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사건에서나 중재판정부의 판단 하에 서면심리도 가능하다는 것은 신속한 절차 진행과 국제중재 이용자들의 편익을 보여주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판정기한에 제한을 둔 것도 마찬가지이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연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3개월이나 6개월, 그리고 심리종결일로부터 14일이라는 제한으로 인해 악의적으로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고, 그로 인한 과도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

## IV. KCAB 신속절차의 활성화 방안

지금까지 아시아의 주요 국제중재기관인 CIETAC, HKIAC, SIAC, 그리고 KCAB의 신속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신속절차를 시행하고 있던 기관들과 KCAB의 신속절차는 크게 보면 비슷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신속절차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80) <표 1>의 금액기준은 2012.11.19. 매매기준 환율을 적용하였다. (미화 1달러=1087원, 싱가포르 1달러=887.35원, 인민폐 1위안=174.32원)

첫째, 국제중재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신속절차의 적용범위를 현행 2억 원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규칙에서 분쟁금액이 2억 원 이상이어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신속절차를 적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의 다른 경쟁 중재기관들의 현황을 살펴볼 때 상대적으로 고액까지 신속절차 적용이 가능한 SIAC는 제외하더라도 CIETAC은 약 3억 5천만 원, HKIAC은 약 2억 7천만 원 정도이다. 이러한 신속절차 적용범위의 트렌드에 맞추어 KCAB 역시 약 3억 원 정도로 신속절차의 적용범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본다.

둘째, 적용범위 이내의 소액사건일 경우 신속절차의 비용에 대한 명시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재비용은 신청요금과 관리요금을 비롯하여 중재인의 수당과 경비 및 기타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sup>81)</sup> 각각의 비용은 KCAB 국제중재규칙 상에서 분쟁금액에 맞게 정해진 요율표에 따라 정해진다. 신속절차는 중재절차 안의 세부적인 규칙의 하나이고, 당사자의 합의 원칙에 의해 적용범위 이상이어도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신속절차 적용이 가능하므로 국제중재규칙 상의 요율표에 따라 중재비용이 산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KCAB는 신속절차의 적용범위인 2억 원 이하의 사건일 경우 절차의 신속성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관리비용과 중재인 수당을 인하하고, 신청요금을 면제하는 등 사무처리규정을 통해 당사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있다.<sup>82)</sup>

그러나 현행의 사무처리규정 상의 관리비용 및 중재인 수당은 규칙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속처리 절차로 얼마나 비용절감이 가능한지 당사자들이 직접 비교해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규칙상에 명시하여 비용절감률을 홍보한다면 신속절차를 적용하는 국제중재사건을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서면심리로 진행되는 적용금액 범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중재는 당사자 중 일방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회의 구술 심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욱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행될 수 있는 심리방법은 서면심리이다. 그런데 현행 신속절차에서 서면심리가 가능한 사건은 당사자가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고, 신청금액 및 반대신청금액이 각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신속절차에서 서면심리가 가능한 상한금액을 좀 더 높인다면 보다 많은 중재사건의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sup>83)</sup>

81) 'KCAB 국제중재규칙 2011' 제7장 45조 제1항.

82) 김태훈·차경자, 전계서, p.12.

83) 그러나 서면심리로만 진행할 경우에도 단점이 존재한다. 심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이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가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의 보수가 추가로 들어 중재비용보다 변

넷째, 신속절차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1년 9월 국제중재규칙의 개정에 따라 신속절차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의 국제중재사건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신속절차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 및 교육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V. 결 론

국제상사중재는 당사자의 합의로 사인 또는 사적 기관이 주체가 되어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국제거래 계약에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자주 사용하는 분쟁해결제도이다. 기업들의 국제중재 이용건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중재사건 유치에 대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하게 되면 거액의 중재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분쟁 당사자인 기업 관계자들과 변호사 등이 현지에서 쓰는 체류비용도 국가의 수입과 직결된다. 또한 국제중재가 많이 유치되면 그로 인한 생산 유발 및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커질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중재기관들은 중재규칙의 개정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중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면서 일정 금액 이하의 중재사건에 대해 신속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KCAB도 2011년 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하면서 신속절차 규칙을 신설하였다.

KCAB 신속절차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신청금액과 반대신청금액이 각각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국제상거래분쟁에 적용되며, 중재인 선정에 대해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사무국이 국제중재인명부 중에서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심리는 1회로 종결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청금액 및 반대신청금액이 각각 2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두심리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신속절차의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하고, 판정문에는 판정 이유의 요지만을 기재해도 된다.

기존에 존재했던 KCAB의 국내중재규칙의 신속절차에서는 규정하지 않았지만, 국제중재규칙에서 신설되면서 더욱 절차가 개선된 것이다. 신속절차의 신설로 인해 소액인 국제중재사건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고, 중재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우리나라(KCAB)의 신속절차와 중국(CIETAC), 홍콩(HKIAC), 싱가포르(SIAC) 등 다른 아시아 국가의 중재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신속절차를 적용법

---

호사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위, 중재인 선정, 심리절차, 판정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 아시아 4개국 국제중재기관의 신속절차에 대하여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신속절차의 적용범위는 각 기관별 분쟁금액 제한범위가 2억 원부터 약 44억 원 정도까지 다양하다. 둘째, 신속절차의 중재인 선정은 일부 선정 방법에 차이가 나지만, 모든 기관이 당사자가 따로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1인의 단독 중재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동일하다. 셋째, 신속절차의 심리횟수에 대한 차이는 기관별로 조금씩 있지만, 심리절차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따라 구술 심리와 서면심리가 가능하다. 넷째, 신속절차의 판정은 기관별로 판정기간이 상이하지만, 모든 기관의 사무국이나 중재판정부의 판단 및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인정이 될 경우 판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중재에서의 신속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속절차의 적용범위를 현행 2억 원보다 상향 조정함으로써 보다 큰 금액의 국제중재사건이 신속절차에 의해 처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용범위 이내의 소액사건일 경우 신속절차의 비용에 대한 명시된 규정을 마련하여 비용절감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서면심리로 진행되는 적용금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신속절차에 대한 중재당사자의 비용 대 편익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속절차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와 교육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2011년 9월 국제중재규칙의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된 신속절차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모색해 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신속절차 제도의 도입이 일천한 탓에 구체적인 사례 분석 및 통계에 입각한 실증 분석은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이수·박종삼, 「국제거래분쟁론 : 상사중재,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삼영사, 2010.  
 광영실·김석철, 「상사중재론」, 두남, 2008.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  
 김광수·이양숙·이창훈, 「국제상사중재의 이론과 실무」, 보명BOOKS, 2012.  
 김도훈, “국제중재에서의 신속절차에 관한 고찰 : 대한상사중재원의 개정 국제중재 규칙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2012.  
 김상호,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두남, 2008.

- 김재명, 「무역클레임과 ADR」, 두남, 2012.
- 김태훈·차경자,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규칙의 최근 개정내용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2권 제1호, 2012.
- 김학기, “구술심리의 실무적 고찰: 변호사 설문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제13권 제1호, 2009.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해설」, 대한상사중재원, 2010.
-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 박상조·주기종·윤종진, 「국제상사중재법론」, 한울출판사, 1997.
- 박승락·윤영학·이재영, 「무역분쟁의 예방과 해결」, 우용출판사, 2008.
- 박원형,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의 개정 동향: ICC 중재규칙의 개정과 비교하여”, 「중재연구」, 제22권 제2호, 2012.
- 서세원, “중재판정의 기관력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17권 제2호, 2007.
-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 박영사, 2007.
- 손태우,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선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 신군재, “KCAB 개정 국제중재규칙에 관한 고찰”, 「관세학회지」, 제13권 제1호 2012.
- \_\_\_\_\_, “KCAB 국제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의 비교연구”, 「중재연구」, 제18권 제2호, 2008.
- 신정식·김용일·박세훈, “ICC 중재의 주요특징과 KCAB 중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3권, 2007.
- 오원석,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 ICC, LCIA 및 HKIAC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31권 제1호, 2006.
- 오원석·송수련, “CIETAC(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사건 및 CISG 적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6권 제3호, 2011.
- 오현석, “아시아 국가 국제중재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홍콩의 전략”, 「계간중재」, 가을호, 2009.
- 우광명,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중재규칙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6권 제1호, 2006.
- 우성구·김권수, “HKIAC에 의한 국제상사중재의 본질과 법적문제”, 「산업경영」, 경남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2003.
- 이원정·김성룡, “해사중재에서 런던해사중재인협회(LMAA)와 대한상사중재원(KCAB)

- 간의 소액·신속절차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해법학회지」, 제34권 제1호, 2012.
-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2011 President's Letter and Financial Statements", 2012.
- Chezie Chuwumerije, *Choice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Quorum Books, 1994.
- Gary B.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ommentary and Materials*, Expanded 2nd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 Henny Mardiani, "Arbitration in Singapore", 「중재연구」, 제16권 제3호, 2006.
- James H. Carter and J. E. Neuhaus, Arbitration Under Expedited Discovery Procedures: What are the sacrifices?, *The Arbitration Review of the Americas*, 2011.
- Lawrence G. S. Boo, "SIAC and Singapore Arbitration", *The Asian Business Lawyer*, Vol.1,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 Michael Charles Pryles, *Dispute Resolution in Asia, 3rd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6.
- Schoo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2010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Choic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2010.
- Thomas O. Main, *ADR : The New Equity*, Bepress Legal Series Working Paper, 2005.

대한상사중재원(KCAB)	<a href="http://www.kcab.or.kr/">http://www.kcab.or.kr/</a>
홍콩국제중재센터(HKCIAC)	<a href="http://www.hkiac.org/">http://www.hkiac.org/</a>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a href="http://www.siac.org.sg/">http://www.siac.org.sg/</a>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a href="http://www.cietac.org/index.cms">http://www.cietac.org/index.cms</a>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Expedited Procedur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in Four Asian Countries: CIETAC, HKIAC, SIAC, and KCAB

Beom-Cheol Park

E-Wha Joo

Sang-Ryul Shim

Recently, many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have responded to the business requirements of their users and have revised their rules to enhance the time and cost efficiency.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revised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 in 2011, introducing new arbitration mechanisms like the expedited procedure. Also other Asian arbitration institutions introduced the expedited procedure in their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Now expedited procedures are regarded as a very attractive system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ccordingly, this paper reviewed the expedited procedures of four Asian countries, including China(CIETAC), Hong Kong (HKIAC), Singapore(SIAC) and Korea(KCAB).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meaningful implications to improve the Korean system.

Based on this review, some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the expedited procedure has to be adjusted upward than the current 200 million won. Second, there should be a fee schedule only for the expedited procedure. Third, in case of small amount international disputes, written examination should be more used in the expedited procedure. Finally, KCAB should make strong efforts to improve the awareness and usage of the expedited procedure in Korea.

**Key Words** :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Expedited Procedure, CIETAC, HKIAC, SIAC, KCAB